제3069호
2024. 3. 5.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람	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26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24-261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8
제2024-2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제2024-26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26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편사항 (구 본청) (제3조 ~ 제10조)

1) 국 신설(1국) : 경제문화국

2) 부서 신설(4과) : 정책협력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3) 부서 폐지(2과) : 세무1과, 세무2과

※ 기타 부서의 국 이동 및 명칭변경 사항 등 :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cwgucc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국”을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를 “교육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획재정국)”을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정책협력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조정 및 업무평가”를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로 한다

6. 성과관리계획 및 정책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7. 중구시설관리 공단에 관한 사항

제10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는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문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3.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7. 봉제·인쇄·공구 등 도심산업 육성
8. 가격표시제,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
9.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 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
11.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설치)”를 “(보건소의 설치)”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보건소)”를 “(보건소에 두는 과 등)”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설치)”를 “(동의 설치)”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처리”를 “총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제5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① ---------- 교육정책과----------.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8.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활체육 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	<삭 제>
11. ~ 14. (생 략)	6. ~ 9.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 정책협력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정의 기획, 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 --------- 조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봉제 · 인쇄 · 공구 등 도심산업 육성	6. 성과관리계획 및 정책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7.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7. 중구시설관리 공단에 관한 사항

8. 가격표시제,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	<삭 제>
9.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	<삭 제>
11. ~ 15. (생 략)	8. ~ 12. (현행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7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는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문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3.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7. 봉제·인쇄·공구 등 도심산업 육성
	8. 가격표시제,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
	9.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생활체육 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
	11.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환경국) ① · ② (생 략)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관리국) ① · ② (생 략)	제9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① · ② (생 략)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직속기관	<삭 제>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설치) ①·② (생 략)	제11조(보건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① (생 략)	제12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 총괄----------.
제12조(보건소) ① ~ ③ (생 략)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하부행정기관	<삭 제>
<신 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3조(설치) ①·② (생 략)	제14조(동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동장) ---------- 총괄----------.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26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보강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개요

○ 본청의 국·과·담당관, 보건소의 소·과장 직급, 동의 동장 직급에 관한 사항 명시

○ 직제개편에 따른 과·담당관의 사무분장의 신설 및 변동사항 등

□ 개편사항 상세내역 :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cwgucc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책보좌관)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3항제8호 중 “통신방문 민원처리”를 “기획 · 환경 순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9. 전화 · 방문 · 인터넷 민원접수 및 총괄관리

제5조 앞에 “제2절 행정관리국”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행정관리국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0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CCTV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자체 설치 · 운영부서 제외)

제13조 앞에 “제3절 기획재정국”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기획재정국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6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7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15조로 하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1호 중 “기획 · 조정 및 심사 · 평가”를 “기획 ·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4호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정책협력과)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정 혁신 및 창의 제안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및 민간부문 등 공모사업(총괄)에 관한 사항
5.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 분야 개발 및 효율성 검토
7.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 · 추진 및 총괄관리
8. 공공 · 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9.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주민 네트워크 운영

제16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현 · 과년도 체납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 세외수입(총괄)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부가국세포함)의 소인 및 과오납금 충당 · 환불에 관한 사항

제17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3. 법인 · 개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

제18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득세(총괄)에 관한 사항
3.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제1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경제문화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제문화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 앞에 “제4절 복지환경국”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복지환경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2조)제8호 중 “복지환경국내”를 “복지환경국 내”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5절 도시관리국”을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도시관리국

제28조를 제32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5조로 하고,제32조를 제36조로 하고,제33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4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앞에 “제6절 안전건설교통국”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안전건설교통국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37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4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42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한다.
제48조 앞에 “제4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48조를 제52조로 하고, 제52조(종전의 제48조) 제2항제16호 중 “실시”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정책보좌관)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① · ② (생 략)	제4조(감사담당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직소민원 및 통신방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 기획·환경 순찰----------
9.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9. 전화·방문·인터넷 민원접수 및 총괄관리
10.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11. · 12. (생 략)	10. · 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2절 행정관리국	<삭 제>
<신 설>	제2절 행정관리국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행정지원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경영수익사업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생 략)	12.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7조 · 제8조 (생 략)	제8조 · 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디지털정책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9.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자체 설치·운영부서 제외)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3절 기획재정국	<삭 제> 제3절 기획재정국
<신 설>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기획예산과) ----------.
1. 구정의 기획 · 조정 및 심사 · 평가에 관한 사항	1. ---- 기획 · 조정----------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14. 성과관리(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생 략)	14. (현행 제15호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전통시장과) 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전통시장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경제문화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정책협력과)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정 혁신 및 창의 제안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및 민간부문 등 공모사업(총괄)에 관한 사항 5.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 분야 개발 및 효율성 검토 7.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총괄관리 8. 공공·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9.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주민 네트워크 운영
제18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현·과년도 체납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 세외수입(총괄)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부가국세포함)의 소인 및 과오납금 충당·환불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7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법인·개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8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득세(총괄)에 관한 사항 3.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9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총괄)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4.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부가 국세 포함)의 소인 및 과오납금 충당 · 환불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에 관한 사항	제4절 경제문화국 제19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현 ·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절 복지환경국 <신 설> 제21조 (생 략) 제22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복지환경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 ~ 제27조 (생 략)	<삭 제> 제5절 복지환경국 제2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6조(복지정책과) ----------. 1. ~ 7. (현행과 같음) 8. 복지환경국 내 ---------- 제27조 ~ 제31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5절 도시관리국 <신 설> 제28조 ~ 제34조(생 략)	<삭 제> 제6절 도시관리국 제32조 ~ 제38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제6절 안전건설교통국 <신 설> 제35조 ~ 제36조(생 략)	<삭 제> 제7절 안전건설교통국 제39조 ~ 제40조 (현행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와 같음)
제37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제38조 ~ 제41조 (생 략)	제41조(생활안전과) ----------.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 ~ 제45조 (현행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와 같음)

제3장 직속기관 <신 설> 제42조 ~ 제47조(생 략) 제4장 하부행정기관 <신 설> 제48조(동장의 직급) ① (생 략) ②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 략) 16. 자활공공근로사업 실시 17. ~ 45. (생 략)	<삭 제> 제3장 직속기관 제46조 ~ 제51조 (현행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52조(동장의 직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5. (현행과 같음) 16. ---------- 지원 17. ~ 45.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26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의 보강에 따른 정원 변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안 제2조)
   -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1,303명 → 1,314명(증 11)
     - 집행기관의 정원 : 1,272명 → 1,283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31명 → 31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별표3)
   - ○ 총계 : 1,303명 → 1,314명(증 11)
   - ○ 일반직 계 : 1,295명 → 1,306명
     - 4급 : 총계 6명 → 7명, 본청 5명 → 6명
     - 5급 : 총계 63명 → 65명, 본청 34명 → 36명
     - 6급이하 계 : 총계 1,223명 → 1,23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cwgucc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303명”을 “1,3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72명”을 “1,28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1,31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6	-			
3급	1	1			
4급	7	6		1	
5급	65	36	1	13	15
6급 이하 계	1,231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0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72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1,314명----------. 1. ---------- 1,283명 2.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26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의 보강에 따른 정원 변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 개정

-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 붙임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cwgucc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314	905	31	120	258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306	901	27	120	25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7	6		1	
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65	36	1	13	15
행정	42	27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66	188	4	25	49
행정	167	111	4	9	43
세무	17	17			
사회복지	12	9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7			7	
환경	2	2			
시설(토목8,건축6,지적4,디자인1,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414	300	15	42	57
행정	231	165	11	10	45
세무	26	26			
사회복지	24	12			12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4)	15	14	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9	1		8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1			1	
약무 · 간호	1			1	
간호	16			16	
시설(토목18,건축15,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2	12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70	275	2	28	65
행정	200	153	2	6	39
세무	25	25			
사회복지	39	13			26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1	1			
시설(토목18,건축10,지적7,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4	14			
전기운영(전기)	3	3			
사무운영(워드)	1	1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81	93	5	11	72
행정	53	22	1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28	7			21
전산	1	1			
속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4,전기9)	13	13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3)	12	1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일반1, 기계4, 전기2)	7	7			
위생	3	3			
운전	23	3	2	3	15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2	2			
다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303	894	31	120	258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95	890	27	120	25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63	34	1	13	15
행정	40	25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63	185	4	25	49
행정	164	108	4	9	43
세무	17	17			
사회복지	12	9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7			7	
환경	2	2			
시설(토목8,건축6,지적4,디자인1, 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314	905	31	120	258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306	901	27	120	25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7	6		1	
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65	36	1	13	15
행정	42	27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66	188	4	25	49
행정	167	111	4	9	43
세무	17	17			
사회복지	12	9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7			7	
환경	2	2			
시설(토목8,건축6,지적4,디자인1, 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현 행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410	296	15	42	57
행정	228	162	11	10	45
세무	26	26			
사회복지	23	11			12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4)	15	14	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9	1		8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1			1	
약무·간호	1			1	
간호	16			16	
시설(토목18,건축15,지적6,디자인1,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2	12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64	269	2	28	65
행정	198	151	2	6	39
세무	25	25			
사회복지	38	12			26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1	1			
시설(토목18,건축10,지적7,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1	11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사무운영(워드1)	1	1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414	300	15	42	57
행정	231	165	11	10	45
세무	26	26			
사회복지	24	12			12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4)	15	14	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9	1		8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1			1	
약무·간호	1			1	
간호	16			16	
시설(토목18,건축15,지적6,디자인1,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2	12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70	275	2	28	65
행정	200	153	2	6	39
세무	25	25			
사회복지	39	13			26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1	1			
시설(토목18,건축10,지적7,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4	14			
전기운영(전기)	3	3			
<삭 제>					
사무운영(워드1)	1	1			

현 행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86	98	5	11	72
행정	53	22	1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30	9			21
전산	1	1			
속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4,전기9)	13	13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일반1, 기계4, 전기1)	6	6			
위생	4	4			
운전	26	6	2	3	15
전기운영(전기)	1	1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 · 민방위요원)	2	2			
다군(비상대비 · 민방위요원)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81	93	5	11	72
행정	53	22	1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28	7			21
전산	1	1			
속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4,전기9)	13	13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3)	12	1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일반1, 기계4, 전기2)	7	7			
위생	3	3			
운전	23	3	2	3	15
<삭 제>	9			1	8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 · 민방위요원)	2	2			
다군(비상대비 · 민방위요원)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